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,
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
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서구4 김용연 의원입니다.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
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-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97호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금회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발주자는
석면해체·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한
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
하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.

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안 제7조는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서 ‘석면해체·제거’로 사용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, 안 제7조의2 신설을 통해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본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